



## 법원,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김지영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농구 게임에 NBA 선수들의 문신을 이용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선수들의 문신이 게임에 그대로 복제된 것은 맞지만 그 양이 게임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양을 차지하고, 변형적으로 이용되었기에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배경

- 피고는 게임 개발회사로 매년 미국 프로농구 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 팀들 그리고 선수들의 모습과 문신까지 사실적으로 구현한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음.
  - 선수들은 NBA에 제3자가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할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NBA는 피고에게 이용 허락하였음.
- 원고는 다섯 명의 NBA 선수들이 새긴 문신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들 문신이 피고 게임에 세 번(2013, 2014 그리고 2015년) 등장한 것은 전시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인정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문신을 사람의 피부에 복제 할 수 있는 이용허락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상표권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즉, 원고는 선수들이 화보 등을 촬영할 때 문신이 함께 복제되는 경우에 이용 허락 시장을 노린 것으로 보이나 전혀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농구 선수들이 새긴 문신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음.

## 법원의 판단

### ○ 복제된 정도

- 법원은 복제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기준보다는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인들이 게임에 등장한 문신이 실제 선수들에 그려진 문신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음.
- 그 이유로 게임의 문신은 실제에 비해서 4.4%에서 10.96%의 사이즈에 불과하고, 게임에 등장하는 400명의 선수들 중 오직 3명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 언급하였음.
- 그렇기에 법원은 게임에 문신이 사용된 것은 사소한 이용(de minimis)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 ○ 비배타적 묵시적 이용허락(implied license)

- 법원은 게임 제작자가 문신을 게임에 복제할 수 있는 비배타적 묵시적 이용허락 가진 것을 발견하였음.
-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선수들의 문신을 새긴 타투이스트들은 선수들이 문신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려는 의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부여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상업적 이미지로 복제하는 것이 포함됨.
- 또한 이 사건 선수 중 한 명인 르브론 제임스는 법원을 지지하는 선언문에서 문신이 개성과 정체성의 일부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음.

- 법원 위의 증거와 의견에 동의하며 선수들이 피고의 게임에서 문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이용하락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공정이용 4요소 판단

- 법원은 게임에서 이 사건 문신의 크기가 실제보다 작게 복제되었고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선수들은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신을 새겼지만, 게임에서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형적 사용이라 판단하였음.
- 두 번째로 법원은 타투이스트들이 이 사건 문신을 창작함에 있어서 다른 사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문신에서 자주 발견되는 일반적인 대상과 주제를 표현하여 제작하였기에 이 사건 문신은 공정이용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만큼 창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세 번째로 사용된 양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문신이 크기는 작다고 하여도 그대로 복제되었기 때문에 이는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판단된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법원은 게임에서 이 사건 문신이 복제된다고 하여도 타투이스트의 잠재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농구 선수들이 새긴 문신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4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 본 사건은 2016년 접수된 사건으로 몇 년간 이어져 오던 선수들의 문신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정표가 될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sup>1)</sup>
  - 먼저 게임에 문신이 사용된 것은 그 크기도 작아지고 게임 전체에 비하면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새긴 문신은 그 선수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그 선수가 자신의 외형에 대한 상업적인 라이선스를 줄 때 문신에 대한 이용허락은 타투이스트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허락한 이용허락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만약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임.

---

1) 본 사건 이전까지 2005년, 2011년, 2012년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모든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어서 판결문이 나온 사건은 본 사건이 최초인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819709-SolidOak.html>

<https://www.hollywoodreporter.com/thr-esq/nba-2k-publisher-beats-copyright-suit-lebron-james-tattoos-1286847>



# 유럽사법재판소(CJEU),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최종모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2020년 4월 2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저작권자가 무단으로 YouTube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업로드 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 시 YouTube는 저작권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해당 정보는 우편 주소만을 의미하고, 이메일 또는 IP 주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원고 Constantin Film은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의 영화“Parker” 및 “Scary Movie 5”를 YouTube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추적하고자 YouTube에 해당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요청함.<sup>1)</sup>
- 프랑크푸르트(am Main)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Youtube에게 침해자의 전자우편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원고의

1) Az. C-264/19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sup>2)</sup>

-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제8조 제2항(a)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Youtube에 요청한 전자우편주소 및 IP 주소 등이 해당 규정 명시된 “이름과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판단을 요청함.<sup>3)</sup>

##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단

---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제8조 제2항(a)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름과 주소”에 침해자의 전화번호 및 IP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sup>4)</sup>
- 이는 주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제8조 제2항(a)에 명시된 “이름과 주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규정상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제8조 제2항(a)을 근거로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sup>5)</sup>

---

2) Az. C-264/19

3) Az. C-264/19

4) Az. C-264/19

5) Az. C-264/19

## 평가 및 전망

---

- 저작권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출 시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8조 제2항(a)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임.
- 향후 유럽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8조 제2항(a)에 따른 정보제공범위인 “이름과 주소”에 대하여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 유럽연합 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국내 플랫폼에 업로드한 자에 정보 요청 시, 제공할 정보를 한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
- 향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정보 요청 시 법 규정상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 요청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 가능함.

### 참고 자료

<https://bit.ly/2yCTz0F>

<https://bit.ly/3ayjTX3>



#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최 푸 림 | University of Debrecen, LL.M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렌탈용 자동차에 설치된 무선 라디오 수신기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량을 렌탈하는 행위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여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 또한, 피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의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려움. 따라서, 차량 렌탈 비즈니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배경

- 저작권자인 원고는 정당한 허락 없이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전달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반해, 피고는 렌탈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공장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pre-equipped) 이는 의도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함



## 스웨덴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 2019년 3월, 스웨덴 대법원은 차량 렌탈 서비스의 대상 차량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의 공중전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판결 요청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라디오 수신기가 제조 공정에서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을 렌탈하는 행위가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라디오를 통한 음악 재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고, 따라서 원고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두 번째, 만약 렌탈 행위가 공중전달권을 침해한다면, 렌탈된 차량의 수량과 렌탈 기간은 피고의 공중전달권 침해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부 (보상금이나 형사책임 등)와 제조 공정에서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한 차량 제조 회사가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 관련 법령과 판례

---

-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제8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공중전달권을 가짐. 이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 유럽연합의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 제8조 제2항<sup>1)</sup>은 음반 혹은 음반의 복제물에 관한 보상금 규정을 명시함.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

---

1)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스웨덴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은 공중전달이란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 또한 포함한다고 명시함.
- 또한, 상기 언급한 유럽연합 저작권협약 지침 제8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이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짐.

## 사법 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

- 2020년 1월, 사법재판소 법무관인 Szpunar는 피고가 공정 과정에서 무선 수신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따라서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

- 판결 요청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무선 라디오 수신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렌탈 행위가 WCT 제8조나 스웨덴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이 정의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 수신기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임.

- Sticking Brein 판례<sup>2)</sup>에 따라, 렌탈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의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였어야 함.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
- 첫 번째 항목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항목은 판단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이 명시하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음.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공중송신권과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 그리고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많은 선결 판결이 있었지만, 상기 사건은 차량 렌탈 비즈니스가 라디오 수신기를 고의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임.
- 또한, 라디오 수신기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므로 이를 통한 공중 전달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차후 일방향 전달 단말기와 관련된 침해 사건에 적극 인용될 것으로 보임.

2) C-610/15

### 참고 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oqp=&for=&mat=or&lgrc=en&jge=&td=%3BALL&jur=C%2CT%2CF&num=C-753%252F18&page=1&dates=&pcs=Oor&lg=&pro=&nat=or&cit=none%252CC%252CCJ%252CR%252C2008E%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true%252Cfalse%252Cfalse&language=en&avg=&cid=3143006](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oqp=&for=&mat=or&lgrc=en&jge=&td=%3BALL&jur=C%2CT%2CF&num=C-753%252F18&page=1&dates=&pcs=Oor&lg=&pro=&nat=or&cit=none%252CC%252CCJ%252CR%252C2008E%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true%252Cfalse%252Cfalse&language=en&avg=&cid=3143006)



##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혜성 | 변호사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는 2020년 4월 9일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라고 명령함.

### 사실 관계

- 2019년 3월 유럽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유럽 저작권 지침은 언론사 및 통신사와 같은 뉴스 출판자들(news publishers)이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s)에서 재사용된 기사를 작성한 저널리스트들을 대신하여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저널리스트들이 저작권 이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해당 지침은 2019년 7월 24일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저작권접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국내법에 반영됨.
  - 이는 뉴스 출판자들과 디지털 플랫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는 균형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19년 9월 구글은 이와 같은 저작권 지침 및 입법을 이유로 프랑스 뉴스 출판자들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앞으로 모든 구글 서비스에서 프랑스 뉴스 출판자들이 제공하는 뉴스의 제목을 제외한 텍스트, 사진, 그래프 등의 이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함.

- 구글 측은 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미 2008년에 구글 스스로 ‘뉴스 서비스는 구글 광고 사업과 연결되어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2019년 11월 언론사 및 통신사들은 구글을 프랑스 경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소함.

##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판단

---

○ 위원회는 2020년 4월 9일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지급을 위한 협상을 하라고 명령함.

-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이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 등과 그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 보상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을 수행해야 함.

- 이 협상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저작권접권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24일로 소급하여 그때부터의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하여 행해져야 함.

- 구글은 위원회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매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구글의 프랑스 뉴스 이용 중단 선언은 구글의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남용하여 뉴스 출판자들에 대한 보상을 전면적으로 거부(blanket refusal)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심각하고 즉각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 위원회는 구글이 2019년 말 기준 프랑스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검색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투자로 인하여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함.
- 구글이 언론사 및 통신사들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저작권접권을 인정한 EU 지침을 가장 먼저 국내법에 반영한 프랑스에서 유럽 회원국 최초로 구글의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지급을 인정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각국 법에 도입할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도 유사한 다툼 및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VJvzkH>

<https://bit.ly/2VYnFEf>



##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박성진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야외에 설치되어 일부가 도난 및 훼손된 설치저작물에 대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소유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 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피고는 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관임.
  - 피고는 1991년에 오브(Aube) 지방에 위치한 댐을 장식하기 위한 설치미술 공모전을 주최함.
- 원고들은 이 공모전에서 우승한 조각가 2인임.
  - 이들이 콘셉트를 고안해내고 도안을 그려 출품한 ‘물의 고리(Le cercle d'eau)’는 1993년에 이 댐 주변에 시공되었고, 야외에 위치해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함.
- 이 작품은, 이후, 공중에 의해 상당 부분 파손되었으며, 물고기 청동상 등 일부 요소는 도난당함.
  - 원고들은 1997년에 훼손 및 도난을 복구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4년 이후에야 조치를 취했으며, 그 수준은 저작물의 원상태에 동일 혹은 이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

- 원고들은 자신들이 ‘물의 고리’의 저작자이며, 이 저작물의 소유권자인 피고는 이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 복구요청에 태만하게 대처하여 수년간 ‘물의 고리’가 도난 및 훼손되도록 방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행위에 해당, 혹은, 민법상의 의무 불이행이라며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는 ‘물의 고리’ 일부 요소에 대한 저작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함.
  - 이는 해당 작품제작 당시, 원고들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이 저작물의 일부 요소는 제3자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임.
-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그 설치장소가 특성을 감안하여서 저작물에 자연요소들을 상당부분을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자의 창작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함.
-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작품의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동일성 저하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 저작물의 일부가 제3자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물의 전체를 기



확한 원고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

- 자연요소를 본뜬 주물상에도 저작자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저작물의 소유권자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보전할 의무를 지는가?

## 법원의 판단

---

-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13-1조에 따르면,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 추정함.
  - 피고는 공모전 우승자 발표 시, 원고들을 이 저작물의 조형 예술가로서 지칭한 바 있음.
  - 또, 이 공모전 규칙 제4조는 건축가, 개인 및 관련자, 기술자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함.
  -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와 주고받은 우편물에서 자신을 ‘물의 고리’의 저작자로 지칭하고 있는데, 피고도 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음.
  -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아, 파리 고등법원은 2020년 3월 10일<sup>1)</sup> 원고를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 인정함.
-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비록 그 시작점은 자연의 요소일지라도, 그것을 상(像)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수 번의 스케치를 거치고, 그 크기를 과장하고, 각기 다른 크기로 본을 뜨는 등의 행위는 저작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이고 이에서 창작성이 발현된다고 판시함.
  - 이와 같은 까닭으로, ‘물의 고리’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저작물 전체의 창작성 역시 인정함.

---

1) Cour d'appel de Paris, Pôle 05 ch. 01 10 mars 2020, n° 044/2020.

- 마지막 쟁점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보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살핌.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1-1조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은 시효가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544조는 소유권자는 법률 혹은 규칙이 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물건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행위가 이 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피고가 ‘물의 고리’의 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였고, 추가적인 도난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은 따로 보관하였으며, 이 저작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공중을 대상으로 행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한 경비 보초를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저작물의 상태 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한 것으로 인정함.
  - 그런데 원고들의 주문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동일성 유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는 곧 피고로 하여금 저작물의 불변성을 지키라는 요청과 같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안에서는 피고의 소유권이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에 우선함.



#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권용수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것이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

## 배경

- 종래 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에 필요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거나 권리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락이 닿아도 권리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 저작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음.
  - 또한, 교육기관과 권리자 단체 간에 합의한 법 해석에 관한 지침이 없고, 교육기관의 저작권법 이해도가 낮아 권리 처리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에서 권리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당사자 간 협의 등으로 라이선스 환경정비, 법 해석에 관한 지침 정비, 교육기관 연수 등

을 추진함.

- 2017년 문화심의회가 수업을 위한 모든 공중송신을 권리 제한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한 결론을 내고, 2018년 일본 저작권법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 개정 전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교육기관이 ① 대면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② 대면 수업에서 사용한 저작물을 원격 합동 수업(동시중계)을 위해 공중송신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음(개정 전 일본 저작권법 제35조).
- 그러나 그 밖의 공중송신, 예컨대 대면 수업 연습·복습용 자료를 메일로 전송하는 것, 온디맨드 수업으로 강의 영상이나 자료를 전송하는 것, 실시간 전송 수업 등은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해야 했음.
- 2018년 개정 일본 저작권법은 위의 ①, ②에 더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경우라면 그 밖의 공중송신까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권리 제한 대상이 된 공중송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등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
- 이러한 개정 일본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은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이하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

## 개정 저작권법 조기 시행

---

- 도쿄대를 비롯한 구 제국대학 7교와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원

격수업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문화청 등에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조기 시행을 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함.

-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서 도입된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은 각 분야의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2020년 4월 6일 지정관리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등 관리협회’에서 2020년에 한 해 보상금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밝힘.

##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문화청의 입장

- 교육의 공익성에 비추어 권리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당함.
- 다만 오늘날의 복제기기 등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공중송신 모두 저작권자에게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미치므로 유상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 자료

<https://mainichi.jp/articles/20200406/k00/00m/040/186000c>

<https://www.tokyo-np.co.jp/s/article/2020041001001606.html>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92169601.html>

<https://www.u-tokyo.ac.jp/content/400137295.pdf>